

.....

.

.....

2012. 5.



제1장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정의	1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2
제3장	등록절차	4
제4장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7

(붙임1~9) 서식 및 관련법규 등



<http://law.fss.or.kr>

:

(02-3145-6707)



## 제2장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

3 , 4 5  
3 , 4 5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가 가  
,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예시)

①

가  
가  
가



,
,
가
DLS, ELS
ADR, EDR

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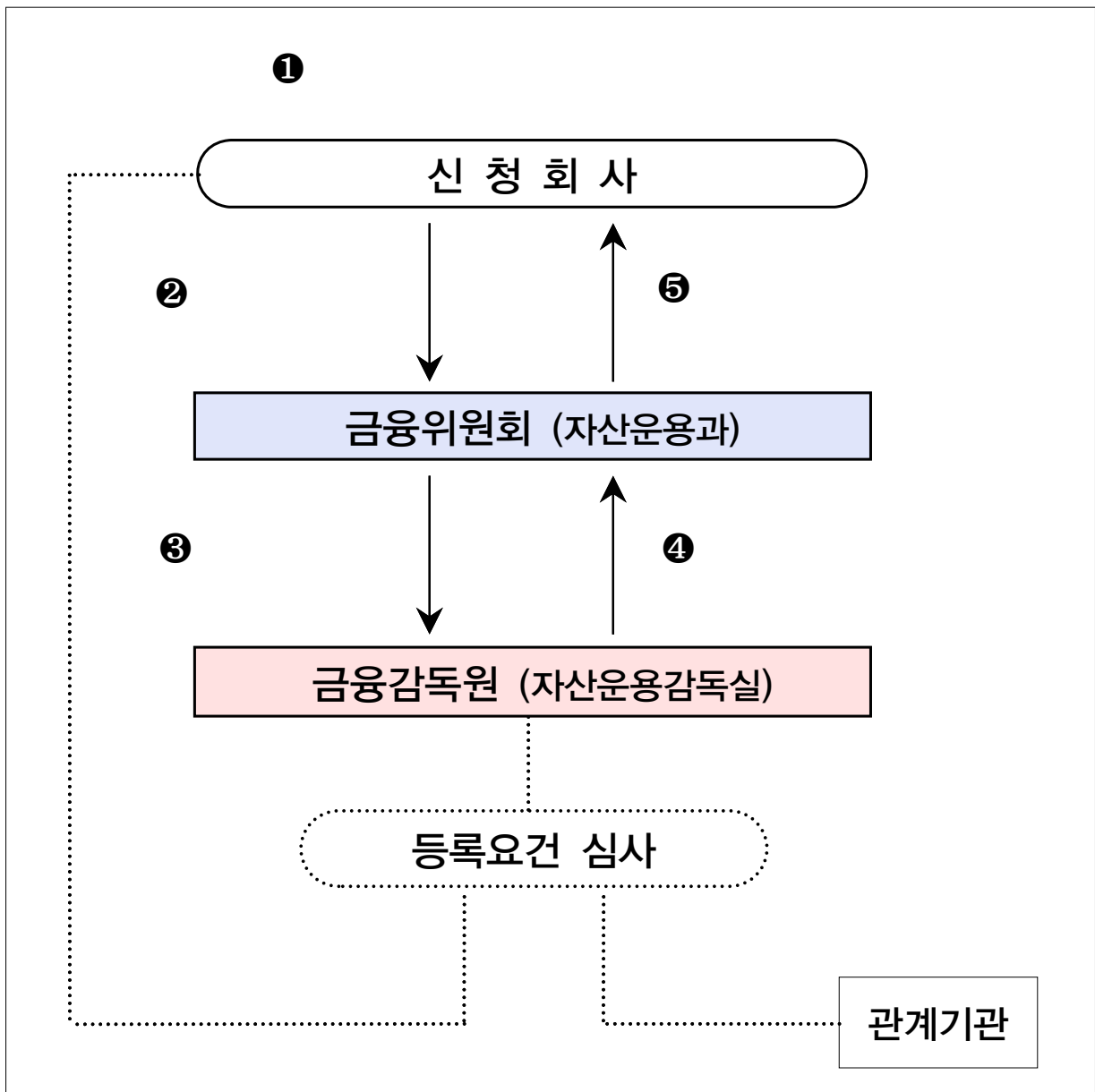
가 . . . . . (Forward)
(Futures)
가 . . . . . (Option)
가 . . . . . 가 (Swap)

 금융투자상품 제외대상 (CD),

# 제3장 등록 절차

 : 21 22 , 18 19 2-9

## 등록절차 흐름도




 세부 등록절차 (신설법인 기준)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가

( “ ” )

	○		
	○		5
1)	○		15
	○	.	20
	○	18	
	○	24	
	○	:	1
	○	:	2
	○	.	:
	○	,	
	-		
	-		
1)			1/2

 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

」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1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가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 02-3145-6707)

## 제4장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

3

22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①	①	②

①

“ ”

가

②

) (153-743)

27

: 02-111-1111

: 02-111-1112



: 가

:

,

,

:



“ ”

.

##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①			②	③	④		⑤	⑥

① , ,

②

③

,

5

)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07.3 ~ 현재	00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04.3 ~ 2007.2	AA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02.4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④

“ ” ,

“ ”

⑤

“ Y” ,

“N”

⑥

24

“ N”



:

: 5

: , , ( )  
( 2 )

: 5  
가 ( )

: 24

( 3 )

###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b>①</b>	<b>②</b>	<b>③</b>

**①** : 5-0-1, 5-0-2, 6-0-1, 6-0-2

**②** :

③

:

,

3

5-0-1	'	5
5-0-2	'	2.5
6-0-1	'	15
6-0-2	'	7



:

,

( )

( , ), 2

( 4 )

: 97 , 98 4-73

( 5 )

,

:

.

97 , 98 4-73

( 6 )

:

99 ,

100

4-78

( 7 )



#### 4. 재무에 관한 사항



① 3 ( )

② 3 ,  
( )

③ 가

 가 (ex. ) .

####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	
		①	②

①

②



: 5

:

:

## 6. 대주주에 관한 사항

① ( ),



: ( )  
) ,

: 2-9 1

( .

) ( 8 )



가

:

( )

: , , ,

: ,

### 대주주의 범위

-

가



( )

- 10%

( )

-

- 가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①

가

· 가 ·

② 가

③

## 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

,

,

○

:

,

가

## 제5장 참고 사항

---



:

18

21

23

2 - 9



외국투자자문·일임업자



업무 추가 및 변경등록

가

가/

23

2



겸영금융투자업자

가

23

2

16

8

가



가/

( 8)

( 1 )

<별지 제3호>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 · 소재지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기재상의 주의

- 1. 결격사유는 법 제24조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투자자문 · 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 · 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6-2.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6-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8-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8-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의2>

역외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 명칭 등

- 상호, 설립일, 자기자본 · 운용자산규모, 본점의 위치 및 명칭, 그룹 조직도 등 개황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해당국가에서의 설립증빙서류 1부
- 1-3.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인에 대한 출자구조를 설명한 그룹 조직도 1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직원수 :   명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 첨부서류

- 2-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2.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직무수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류 각 1부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일반투자자)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 · 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 5-1.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준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증빙서류 각 1부

**6.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6-2.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연락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영위업무, 해당 신청업무의 담당자 및 연락처

**■ 첨부서류**

- 7-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7-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2)

## 신원조회 의뢰서

###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sup>1</sup>	등록기준지 <sup>2</sup>	조회기관 <sup>3</sup>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3 )

###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다는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 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공사채 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4)



## 1.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

- 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전체 조직체계를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여 담당업무를 자세히 표현한 조직도를 첨부

##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 3. 사업계획

### 1) 개요

- 회사개황, 설립배경, 사업목표 및 전략, 주된 타겟시장, 업계 현황 등

### 2) 향후 2개년 사업계획

#### ① 투자자문 및 일임업 수행 전략

- 투자원칙, 주된 운용방법(주식, 파생 등), 기타 전략 등 기술

#### ② 마케팅 전략 : 주된 대상고객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기재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투자조언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투자조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조언방법 및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라.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마. 고객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일임받는 투자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일임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당해 투자자문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가. 업무절차 또는 지침은 고객의 학력, 경력, 유가증권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가.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당해 임직원이 과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대상 재산의 투자실적을 경력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요경력에는 전·현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주요자격증 취득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학위 취득현황 중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를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포괄적 면책조항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회사의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계약의 종료해지 시 해지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 8.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 방법

- 가. 투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투자수익률 등)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의 고객통보방법은 통보시기, 통보수단, 통보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8. 기타 : 시행령 제9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73조 각 호의 사항 (관련법규를 참고)

( 6)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2.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당해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13.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한다는 사항
15. 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당해 임직원에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17.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8.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19.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20.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1.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7)



1 22

<제22호>

##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단위 : 원, %)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00.00.00 ~ '00.00.00
계약금액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해당기간 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예정일을 기재한다.
- 2) “평가금액”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 3) “누적수익률”은 계약일로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 4) “해당기간수익률”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수익률을 기재한다.
- 5) 구체적인 수익률 산정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투자자의 투자성향

가. 투자자의 연령, 재무상태, 금융자산비중, 투자위험 감수능력 및 투자경험 등을 토대로 투자일임업자가 파악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나.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및 편입제한 등 투자일임재산운용에 대하여 부여한 각종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시장상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적용된 투자전략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종목, 매매가격,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구분	종목명	매매일자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위탁매매수수료	각종세금

- 1)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기재한다. 투자일임재산 중 일부를 콜론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매수와 매도내역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매매가 아닌 사유(예: 공모주 청약, 유상증자, 감자 등)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다만 동 거래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 하단에 기재하고 이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2) “구분”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 동일일자에 동일종목 매수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일종목 매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매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단일의 매수 또는 매도로 기재할 수 있다.
- 4) “매매금액”은 수량과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총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단위 : 원, %)

구분	매수금액	매도금액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매매회전율”은 대상기간 중 산정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평균한 가액을 대상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시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2 /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 × 100]

- 2)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 3)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다만, 동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 투자전략, 시장상황분석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예시] 투자일임재산이 특정주식에 일정규모(예: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 이상)이상으로 투자되는 경우의 그 주식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범위 상위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위험(원금손실가능여부, 과거 주가추이 및 관련 산업동향 등), 조사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동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 및 향후 주가전망, 동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전략 등을 기재한다.

마.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추천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사항(예: 회사명, 회사개요, 전문인력현황 등)을 기재한다.

#### 4.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은 최근 3, 6, 9, 12개월간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구 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투자일임 계약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 1) “비교지수 수익률”은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에서 특정 비교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지수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기재하고 주식투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지수 수익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2) “최근 3, 6, 9, 12개월”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 6, 9, 12개월을 의미한다.

나.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 보유현황 및 비중을 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종목별 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보유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종목명	보유 수량	취득 단가	시가	보유 잔액	보유 비중

- 1) “취득단가”는 평균취득가액을 기재한다.
- 2) “보유잔액”은 보유수량 × 시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보유비중은 각 종목별 보유잔액이 전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4) 현금 등과 같이 보유수량, 취득단가 등을 기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유잔액 및 보유비중만 기재할 수 있다

## 5.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계약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단위 : 원)

구 분	투자일임 수수료	성과 보수	위탁매매 수수료	각종 세금	기타 비용	총비용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2)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3) 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투자일임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방법, 성과보수를 부과한 경우 부과기준 충족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직위	성명	운용 개시일	운용중인 다른 투자일임계약 현황		주요 경력	연락처
			투자일임 계약(건)	운용규모 (백만원)		

- 1)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실제로 담당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기재한다.
- 2) “주요 경력”에는 최근 5년간 전·현 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운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기재한다.

## 7. 그 밖의 작성방법

-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다만 그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 8 )

[ 가 ]

###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sup>1)</sup>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최근 5년간 신청한 등록업무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닐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성 명 : A B C 은 행 (인)



[      가                      ]

##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sup>1)</sup>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최근 5년간 신청한 등록업무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닐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 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1. 〇. 〇〇

성 명 : A B C 주식회사 (인)

[        가        ]

##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sup>1)</sup>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최근 5년간 신청한 등록업무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단위를 가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닐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1. ○. ○○

성 명 : 홍 길 동 (인)

